

부록

1_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 - 1차 델파이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서울연구원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 라도삼 선임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i.re.kr
연구원	: 조운정 연구원	(02-2149-1138)	choyj@si.re.kr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및 중요도

1.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르겠음

2. 서울시는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 개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시민예술동아리 대제전(생활예술축제) 개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등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청춘극장(어르신전용 영화관) 운영,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다국어 관람안내 표지판 설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외국인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등) 설치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등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성평등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실시, 중국동포문화의 이해교육, 성인지 통계 작성,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세계문화도시포럼(WCCF) 참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 위에 제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은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사업유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2-1.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있다면, 해당 정책명(사업명)과 이유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명	
이유	

- 2-2.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있다면, 해당 정책명(사업명)과 이유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명	
이유	

3. 서울시 문화정책 분야 중 문화다양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문화정책 분야를 구분할 경우, 문화다양성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현재와 향후를 기준으로 문화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정책 분야	중요도 우선순위	
	현재	향후
문화다양성정책	()위	()위
예술정책(예술창작지원, 예술인 권리 증진 등)	()위	()위
전통문화정책(문화재 관리, 전통문화 지원 등)	()위	()위
문화여가정책(생활문화 활동 지원, 축제지원 등)	()위	()위
문화예술교육정책	()위	()위
국제문화교류정책	()위	()위
도시디자인 정책(공공미술, 도시디자인 등)	()위	()위

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적절성 평가

4. 다음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각 조항의 적절성을 평가해 주시고,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1. 제2조(정의)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제4조(시장의 책무)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2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제6조(실행계획)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3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1항 역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3. 문화다양성 지원
4. 문화다양성 교육
5.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6.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7.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8.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심의조정 사항

4-4.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 관련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	-------	------	------	---------

4-4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문화다양성 위원회) 2, 4, 6항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5.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규모, 당연직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관련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	-------	------	------	---------

4-5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분과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6. 제8조(분과위원회)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6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7. 제9조(전문위원)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7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항 조사주기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4-8.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사주기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8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항 조사내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4-9.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사내용 구성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9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4-10.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구성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0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4-11.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 교육내용 구성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1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4-12.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양성사업 구성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2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13.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3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권고)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4-14. 제15조(권고) 권고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4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4-15. 제16조(표창)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5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에서 보듯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아래 박스와 같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적, 2. 정의, 3. 사회구성원의 책무, 4. 시장의 책무,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6. 실행계획, 7. 문화다양성위원회, 8. 분과위원회, 9. 전문위원, 10. 실태조사, 11. 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 12. 보호 증진 교육, 13. 전문인력 양성, 14. 지역협의체 운영, 15. 권고, 16. 표창
--

5-1. 조례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르겠음

5-2. 현 조례안에서 새롭게 추가해야 할 조항이 있거나 삭제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없으면 해당 칸에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야 할 조항	
삭제해야 할 조항	

6.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행해야 할 정책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서울시 정책 내용	중요성					시급성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 시장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지역협력체> 운영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 인력양성										
· 차별행위에 대해 개선 권고 (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III.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방향

7. 다음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의 정의입니다. 아래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7-1.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위에 제시된 문화다양성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7-2. 서울시 차원에서 위 문화다양성 개념을 보완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8~10번 문항은 저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이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입니다. 자문위원단은 문화정책, 인권, 장애인, 문화다양성, 문화행정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 다음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저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은 아래 표와 같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방향	정책내용	정책원칙
① 소수자의 기본 권익 보호	차별적·배제적 표현으로부터 소수집단 보호	불관용/ 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 권 보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정체성이나 취향을 표현할 권리	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 간 상호이해 및 융합도모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교류활동 촉진	포용 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	문화다양성 관련 특화 밀집지역의 보존 문화다양성 관련 기반 인프라 확충	보존/보호 정책

8-1. 위에 제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⑤ 모르겠음

8-2. 위에 제시된 정책방향 중 수정삭제·보완되어야 하는(수정) 내용이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8-3. 서울시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에서 제시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우선순위	시급성 우선순위
① 소수자 권익보호(불관용/규제 정책)	()위	()위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위	()위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촉진/확산 정책)	()위	()위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도모(포용 정책)	()위	()위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위	()위

9.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다양성 영역을 기본영역과 환경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은 아래 박스의 오른쪽 표와 같이 기본영역과 환경영역을 통합하여 △민족과 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 지향, △비주류예술 등 7가지 요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연구진 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분류영역	분류영역	
기본 영역 (1차 범주)	민족	민족·인종	
	국적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세대		
환경 영역 (2차 범주)	종교	종교	
	소득		
	훈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 9-1. 위에서 제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⑤ 모르겠음

- 9-2. 위에서 제시된 분류체계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합니다. 아래 박스는 그런 정책 방안을 제시한 예입니다. 이 예를 보시고,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예술영화관, 실버극장 등)
- ② 관련된 활동이 집중되거나 밀집된 지역의 보전 및 육성(외국인밀집지역, 어르신 활동밀집지역 등)
- ③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원 사업
- ④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
- ⑤ 시민 간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사업
- ⑥ 소수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및 접촉면을 높이는 사업
- ⑦ 서울시 정책 전반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차별요소 검토 의무화, 인센티브 등)
- ⑧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 ⑨ 기타

10-1. 위 예시를 참고하여 각 소수자 집단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무엇인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자 집단	필요한 정책
민족/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10-2. 위 예시를 참고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모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IV. 응답자 일반사항

11.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일반 사항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여 ② 남 ③ 기타 ()
2) 연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주요 활동분야 (복수선택 가능)	①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② 장애인 ③ 성소수자 ④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⑤ 문화정책 관계자 ⑥ 기타 ()
4) 직업 (주 활동 기준으로 하나만 선택)	① 교수, 연구직 ② 활동가, 관련 사업운영 ③ 행정직 ④ 기타 ()
5)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아주 많음
6) 핸드폰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_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 - 2차 델파이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및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총 54명 중 46명(85%)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46명을 대상으로, 1차에서 수렴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1차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주로 선택형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 다양성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서울연구원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 라도삼 선임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i.re.kr
연구원	: 조윤정 연구원	(02-2149-1138)	choyj@si.re.kr

1. 문화다양성 조례의 적절성 평가

※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제2조 정의', '제7조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규모, 임기', '제12조 교육', '제10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 및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위 네 가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조 정의'의 제안의견 판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㉔)“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㉕)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㉖)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㉔)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㉕)국적, 민족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구성', '(㉖)사회 미풍양속이란 표현' 등 3가지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

1-1.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에 대해 '문화적 차이 존중', '문화적 가치 존중' 등으로 수정하지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 ②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수정
- ③ '문화적 가치 존중'으로 수정
- ④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⑤ 모르겠음

1-2.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에 대해 현 구분체계를 수정하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정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수정 적절	수정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성적지향' 추가			
② '성별'을 '성'으로 수정			
③ 정신적·신체적 능력 외 '경제적 능력' 추가			
④ '세대'를 '연령'으로 수정			
⑤ '학력'을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로 수정			
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장애'로 수정			
⑦ 기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1-3.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에 대해 여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사회적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 ② 단서조항 문장 삭제
- ③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④ '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⑤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를 하는'으로 수정
- ⑥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⑦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⑧ 모르겠음

2. '제12조 교육'의 제안의견 판단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a)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b)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c)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a)교사, 청소년, 그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육대상'에 대한 의견, '(b)각 호로 구성된 교육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c)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2-1.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구성된 교육 대상에 대해 여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정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의 적절성	수정 적절	수정 부적절	모르겠음
① '시민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민' 표기 추가			
② '공무원 및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 표기 추가			
③ '학부모' 표기 추가			
④ 기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2-2.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에 추가해야 할 사항	추가 적절	추가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인간의 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			
②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			
③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러닝 교육			
④ 타인(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교류에 기반한 교육			
⑤ 예술과 접목된 다양성 교육 실행			
⑥ 기타 추가되거나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2-3. '각 호로 제시된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 중 '2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그대로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 ② 문화다양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
- ③ 문화다양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④ 모르겠음

3.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의 제안의견 판단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2, 4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당사자 참여확대와 더불어 시민 및 청년의 참여확대, 전문가 참여확대, 관련 부서 참여 확대 등 (㉔)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3-1. 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화다양성 당사자 계층의 참여’, ‘시민 및 청년·청소년의 참여 확대’, ‘전문가 참여 확대’, ‘담당부서의 참여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아래 대상 중 어떤 대상 참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추가(문화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 ② 시민 및 청년, 청소년
- ③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문화산업, 인권, 성평등, 시민민주주의, 예술가 등)
- ④ 다른 분야의 담당부서 참여 및 당연직 확대(지역문화, 생활문화 관련 부서장 참여, 기획담당부서, 교육담당부서,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부서 등)

4. ‘제10조 실태조사’의 제안의견 판단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인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②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⑥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②‘실태조사의 주기’ 및 ⑥‘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4-1. 현재 실태조사 주기는 2년마다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에 대하여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태조사 주기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년마다 ② 2년마다(현행 규정) ③ 3년마다 ④ 5년마다
- ⑤ 기타(이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⑥ 모르겠음

4-2. 조례에 제시된 실태조사 항목 외 추가조사되어야 할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실태조사 추가 항목에 대해 포함 필요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내용 관련 제안 내용	포함 필요	포함 불필요	모르겠음
① 문화다양성 침해사례 조사			
②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조사			
③ 시정 내 문화다양성 반영 현황			
④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대상자 대상 실태조사			
⑤ 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태계의 문화다양성 실태			
⑥ 문화유산(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⑦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⑧ 기타(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판단

문화다양성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이행사항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중요성		시급성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4.37	3	4.35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4.26	4	4.09	5
시장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4.00	7	3.98	6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	3.74	8	3.67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4.26	4	4.13	4
문화다양성 교육	4.48	2	4.37	2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4.07	6	3.85	7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4.61	1	4.39	1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3.09	9	2.70	9

5-1. 중요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중요성 순위(1순위~4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시장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5-2. 시급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중요성 순위(1순위~4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시장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II.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

6.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의 적절성 및 제안의견 판단

문화다양성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 다양성 정의를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6.6%, 부적절 의견이 32.3%로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법 제2조(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6-1. 귀하는 위의 <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를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법 정의 그대로 사용(질문 6-3으로 이동)
- ② 서울시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질문 6-2로 이동)

6-2. 다음은 문화다양성 개념을 서울에 맞게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을 정의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고려 필요	고려 불필요	모르겠음
①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특성을 살린 개념 제시 필요			
② 예술에 한정된 범위를 예술외 문화적 표현으로 확산			
③ 개인의 취향 표현 보호를 포괄하는 내용 포함			
④ 소수자 문화권 표현에 대한 내용 명료화			
⑤ 일상생활 문화범위로 확대			
⑥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6-3. 응답자 중 한 분이 아래와 같은 정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안된 정의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문화다양성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성 등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 및 사회 구성원이 생산하고, 발달, 전수해 온 문화유산 및 동시대에 생산하고 전수하고 있는 문화들을 표현하고 진흥, 전달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말하며, 이는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7.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시급성 판단

서울시 문화다양성 추진 방향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 후 적절성을 질의한 결과, 96%의 응답자가 적절하다는 응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중요성과 시급성의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시급성 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1	1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2	2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촉진/확산 정책)	4	4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3	3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5	5

7-1. 중요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1순위~5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7-2. 시급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1순위~5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8. 서울시 문화다양성 대상 분류체계의 제안의견 판단

정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분류 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여 적절성을 설문한 결과 84.8%가 적절하다는 응답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연구진 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분류영역	분류영역	
기본 영역 (1차 범주)	민족	민족·인종	
	국적		
	성별	신체능력(장애)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	
환경 영역 (2차 범주)	세대	나이(세대)	
	종교	성적지향	
	소득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8-1. 위 분류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추가 항목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추가 적절	추가 부적절	모르겠음
① 인종, 민족 외 '국가' 추가			
② 종교 외 '사상' 추가			
③ '소득' 항목 추가			
④ '전통예술' 항목 추가			
⑤ '지역' 항목 추가			
⑥ '다양한 기호와 취향의 차이' 추가			
⑦ 그 외 추가할 항목이나 삭제할 항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2. 위 분류체계에 대해 '종교'와 '성별'에 대해 삭제 및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삭제 의견	적절	부적절	모르겠음
① '종교' 항목 삭제 이유: 유사종교(사이비종교)에 대한 인정문제와 충돌 우려 있음			
② '성별'을 '성'으로 수정 이유: 성별은 남성, 여성을 대변하므로 부적절함			

8-3. 위 분류체계 중 '신체능력(장애)'를 △장애, △신체적 차이, △신체적·정신적 차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신체능력(장애)'로 표기
- ② "장애·비장애"로 수정
- ③ "장애"로 수정
- ④ "신체적 장애"로 수정
-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수정
- ⑥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⑦ 모르겠음

8-4. 위 분류체계 중 ‘비주류 예술’ 항목에 대해 ‘비주류예술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비주류 예술로 구분 시 용어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비주류 예술’로 표기
- ② “비주류 예술” 삭제
- ③ “비주류 문화”로 수정
- ④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⑤ 모르겠음

9.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 방안

문화다양성 집단별 문화다양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중복응답 허용)

정책방안	민족·인종	신체능력	종교	성별	나이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5	12	0	5	14	2	11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10	1	2	4	5	2	6
3. (예술)활동 촉진 지원사업	13	12	1	8	11	13	26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4	10	3	3	7	4	7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15	9	14	12	12	17	5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19	8	8	6	7	15	11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	8	13	13	18	9	17	6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1	22	4	5	8	5	4
9. 기타	4	10	4	4	6	3	5
총계	79	97	49	65	79	78	81

9-1. 1차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각 집단에 우선 필요한 정책을 순위별로 3순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방안	민족·인종	신체능력	종교	성별	나이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3. (예술)활동 촉진 지원 사업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9. 기타(세부내용:)							

9-2.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서 ‘소득’, ‘전통예술’, ‘지역’, ‘기호와 취향’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을 추가했을 시 각 대상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방안	소득	전통예술	지역	기호·취향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3. (예술)활동 촉진 지원 사업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9. 기타(세부내용:)				

9-3.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여 어떤 대상의 정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과 시급성을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중요성 순위 (1~3순위)	시급성 순위 (1~3순위)
민족인종		
장애		
종교		
성		
나이		
성적 지향		
비주류 예술		
소득		
전통예술		
지역		
기호취향		

9-4. 서울시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2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조례개정
-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③ 문화다양성 위원회 등 관련기구 구성
- ④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⑤ 다양성 집단 대상 사업 시행
- ⑥ 기타(사업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